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190

발의연월일: 2023. 7. 11.

발 의 자:이만희·정우택·권성동

조은희 · 이명수 · 김용판

구자근 · 김미애 · 박성민

전봉민 · 김 웅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0·29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종전에도 부산 공설운동장 압사사고(1959년), 서울역 압사사고(1960년), 보신각 타종 압사사고(2000년), 상주 종합운동장 압사사고(2005년) 등 다중운집인파사고가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운집인파사고는 아직까지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이에 따라, 재난유형별로 그 특성에 맞게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아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립한(2020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도 인파사고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도 작성되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재난안전 관리체계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환경오염사고"를 "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

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	1
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	
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	
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	나
폭발 ·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화생방사고 · <u>환경오염사</u>	<u>환경오염사고·다</u>
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	중운집인파사고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	
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	
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	
한 피해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